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]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	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전
<u>기준</u> (제5조제3항 관련)	
1. 진찰(한방포함)	1. 진찰(한방포함)
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	
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	
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(이	
하 "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"이	
라 한다)중 <u>진찰료의 55%이내의</u>	<u>진찰료의 40%이내</u>
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	
이 정한 금액	
2. 의학관리(한방포함)	2. <u>입원(한방포함)</u>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입	
원료의 <u>20%이내의</u> 범위 안에서	<u>15%이내의</u>
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	
3. 검사(한방포함)	3. 검사(한방포함)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검	
사료의 <u>50%이내의</u> 범위 안에서	<u>30%이내의</u>
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	
4.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	4.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영	
상진단료의 <u>25%(방사선치료료는</u>	<u>15%(방사선치료료는</u>
50%, 방사선혈관촬영료는 100%)	30%, 방사선혈관촬영료는 60%
<u>이내의</u> 범위 안에서 당해 의료기	이내의
관의 장이 정한 금액	

5. 마취	5. 마취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마	
취료의 100%이내의 범위안에서	<u>50%이내의</u>
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	
6. 정신요법	6. 정신요법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정	
신요법료의 <u>50%(심층분석은</u>	<u>30%(심층분석은</u>
100%)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	<u>60%)이내의</u>
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	
7 키키 스스(커비교회)	7 귀귀 스스(커비교치)
7. 처치·수술(한방포함)	7. 처치·수술(한방포함)
7. 서시·구출(안당포함)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·	7. 저시·구물(안당포함)
	7. 저시·구물(안당포함) <u>50%이내의</u>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	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· 수술료의 100%이내의 범위안에서	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· 수술료의 100%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	<u>50%이내의</u>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· 수술료의 100%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8. 침·구 및 부항	<u>50%이내의</u>
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처치· 수술료의 100%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 8. 침·구 및 부항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중 침·	<u>50%이내의</u> 8. 침·구 및 부항

선택진료 관련 주요내용

* 본 계획을 토대로 한 개략적 추정치

① 연도별 선택진료비의 변화 양상

<2014년> 선택진료비 금액이 평균 35% 감소

○ 현행 진료항목별 20~100% 가산 → 15~50%만 가산토록 조정

구분	검사	영상	마취	진찰	의학관리	정신	처치·수술	침·구·부황
현행	50%	25%	100%	55%	20%	50%	100%	100%
변경	30%	15%	50%	40%	15%	30%	50%	50%

<2015년> 선택진료의사 감소, 비선택의사 증가

○ **병원별 80%** → 진료과목별 65% (3명당 2명)

<2016년> 선택진료의사 감소, 비선택의사 증가

○ **진료과목별 65%** (3명당 2명) → **진료과목별 30%** (3명당 1명)

구분		현재('13년기준)	'15년	'16년	
전체 선택의사수		9,900여명	7,700여명	3,300여명	
상급종합병원	선택의사수 5,700여명		4,400여명	2,000여명	
	자격의사대비 (7,200명) 선택의사비율	79%	61%	28%	
	진료의사대비 (20,000명) 선택의사비율	29%	22%	10%	

^{* &#}x27;13년 조사된 인력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변동과정에 대한 오차 존재

<2017년> 건강보험의 「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」로 전환

○ '14년에 감소시키고 남은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이 50% 지원

< 선택진료비 연도별 축소·전환 규모 >

구분	<u>2014</u>	<u>2015</u>	<u>2016</u>	<u>2017</u>
선택진료비의 감축 비중	35%	15%	30%	20%
개략적인 감축 규모	5,100여억	2,200여억	4,400여억	3,600여억

2 선택진료비 감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안

- (기본원칙) 단순 손실보전이 아닌,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수가조정
 - ①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
 - ② 환자안전(Safety) 등 환자를 위한 서비스 활성화
 - ③ 올바른 종별 기능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유도

연도

'14년

건강보험 적용 방안

총 규모

① **고도 전문적 수술ㆍ처치ㆍ기능검사** 등의 수가 인상

- (필요성)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도 수술 등 수가를 현실화 하여, 전문의료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(방안)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술·처치· 기능검사 등 고도 의료행위의 수가 인상
- ② 고도 중중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가 조정
- (필요성) 중증환자에게 **질적으로 우수한 의료 제공**을 위한 새로운 의료수가 신설 및 조정
- (방안) 암질환대상 공동진료수가 (상급종합병원 한정), 입원중 협력진료, 가정간호 및 수혈관리 등 분야

5,100여억

① 3,500여억

② 1.600여억

연도

건강보험 적용 방안

총 규모

'15~ ′16년 ③ 환자의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가 조정

- (필요성) **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(Safety)을 보다 강화**할 수 있도록 감염·안전관리 관련 수가 체계 마련
- (방안) 소독·무균주사 등 **감염관련 수가 인상** 및 낙상방지· 의료과오예방 등 환자안전을 위한 별도의 수가체계 마련
- ④ **우수한 의료기관**에 대한 기관별 수가('의료질향상분담금')신설
- (필요성) **양질의 의료**를 제공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**선택 비용을 건강보험체계 내에 제도화**
- (방안) 공공성, 의학연구, 교육·수련, 중증질환 진료 등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수가 적용 (본인부담 50%)
- ⑤ 진료협력병원간 협력진료 수가 신설
- (필요성) 상급병원·중소병원이 **자기역할에 맞는 환자를 진료**하고 환자의뢰·회송 등 **진료협력을 강화**
- (방안) 회송시 정보제공 및 회송 노력에 대해 수가 보상 강화

6,600여억

- ③ 1,200여억
- ④ 5,000여억
- ⑤ 400여억

'17년

⑥ '(가칭) 전문진료의사 가산' 방식으로 건강보험 적용

- (필요성) 양질의 진료 및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의사들의 노력을 유도하고, 국민의 의사 선택권을 보호
- (방안) 의사의 전문성, 환자의 병원선택 기준, 진료과의 의사수 등을 고려한 의사기준 마련, 진료비에 대해 가산 적용 (본인부담 50%)

3,600여억